
202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자료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907호
Tel. 031-247-9977 Fax. 0303-0947-9977

☎ gg.kaf.or.kr

✉ kafg@hanmail.net

- 개 회
- 국민의례
- 성원보고
- 의장인사
- 보고사항
 - I. 전차회의록
 - II. 각종 현황
 - III.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
 - IV.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V. 감사보고
- 심의사항
 - I.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II. 임원선임(안)
 - III. 2024년도 사업 주관신청(안)
 - IV. 회원단체 가맹승인(안)
- 기타사항
- 폐 회

1 .	경기도산악연맹 연혁	3
2 .	2023년 정기총회 전차회의록	10
3 .	각종현황	17
4 .	2023년도 사업실적 요약	28
5 .	2024년도 사업계획	32
6 .	2024년도 예산계획	33
7 .	2023년도 사업비 및 경상비 지출예산	34
8 .	감사보고	36
9 .	사업실적 결산(안)	39
10 .	2023년 수입 · 지출 총괄표	50
11 .	2023년 월별 수입내역	51
12 .	2023년 월별 지출내역	52
13 .	임원선임(안)	54
14 .	2024년도 사업 주관신청(안)	56
15 .	회원단체 가맹 승인(안)	58
16 .	기타사항	60
19 .	폐 회	61
20 .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62
21 .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87
22 .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94
23 .	전문등산위원회 운영규정	100

1.

경기도산악연맹 연혁

년	월/일	사 업 명	기 타	
2016	6/22	2016년 통합이전 연혁 생략 (구)경기도산악연맹, 등산연합회 통합	경기도산악협회 창립 회장 김덕진	
	9/3	2016 경기사랑생활체육 등산대회	포천 명성산	
	9/25	경기도산악구조대 등산로 위험지역 낙석제거 및 클린산행	이천 도드람산	
	10/8	양주시/수원시연맹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양주 / 수원	
	10/8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당진종합운동장	
	10/16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여주 마감산	
	10/30	경기도대표팀 선수 선발전	수원 광교호수공원인공암벽장	
	11/6	경기도산악협회장배 등산대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11/12	2016 전국생활체육등산대회-종합우승	제주특별자치도	
	12/3	경기도산악협회 산악인의 밤	원주 VIP레저타운	
	2017	1/14,15	2017 청송 특별산행	경북 청송 무장산
		1/14	2016년도 결산 이사회	경기도체육회관
1/10~11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종합 3위	경북 청송	
3/11~12		전문등산 3급 심판 자격연수	남양주 인공암벽장외	
5/19~20		2017 임원 워크샵	양주 청소년수련원	
6/9~10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종합우승	제주 새별오름	
7/14		경기도시·군산악연맹회장 협의회	양주시연맹사무실	
8월~10월		산악종목육성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등산교실	경기도 일원	
8/26~9/30		경기도등산교육원 경기도등산학교 정규반 37기 개교	경기도 일원	
9/17		제1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종합등반대회 개최	성남 을지대 남한산성 일원	
10/29		제2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경기 화성 서봉산	
11/4		제2차 합동산행 및 워크샵	월악산 만수봉	
11/12		제2회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등산대회 개최	광명 도덕산	
12/29		2017 사업설명회 및 행정개선 세미나 개최	경기도체육회관	
2018		2/3~4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 - 남자 난이도 2위 권영혜 남자 속 도 2위 양명욱	경북 청송
	2/10~11	2018 청송 특별산행	경북 청송 주왕산	
	2/24~25	전문등산 3급 심판 자격연수6	남양주 인공암벽장외	
	4/14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등산대회-종합 2위, 특별상(시흥)	전남 해남 두륜산	
	5/11~12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 어르신부- 부천시연맹	충남 천안 태조산	

일 반 부- 남양주시연맹
종합우승

	5/19~20	제51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종합 3위 / 여자일반부 3위	전남 완도 상황봉
	7.26~7.11	2018 경기도청소년오지탐사 희망원정대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
	9/9	제2회 경기도지사기 전국등반대회	양주 덕계공원 /포천 소흘공원
	10/13~14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 남자일반부 3위(김승현)	전남 완산
	10/28	제2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경기 양평
	10/1~11/30	청소년 유망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라이밍 강습	남양주, 용인, 수원, 이천, 안산
<hr/>			
2019	1/12~13	2019 청송특별산행	경북 청송
	1/19~20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산악 출전 참가인원:10명(임원2명,지도자2명,선수6명)	경북 청송
	3/9~10	전문등산 3급 심판 자격연수	남양주 인공암벽장의
	4/14	제1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등산대회-경기도산악연맹 : 종합우승 경기도 광명시A :시.군.구 1위 경기도 오산시:시.군.구 2위 경기도성남시 :시.군.구 3위	시흥갯골생태공원 (군자봉)일원
	4/27~28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 어르신부 오산시연맹 일 반 부 시흥시연맹 종합2위	충북 괴산 조령3관문
	5/18~19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여자일반부 2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운대일원
	6/9	제3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종합등반대회-일반등산/전문등산/ 스포츠클라이밍 부문	포천 운악산 일원 포천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6/1~11/30	2019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등산교실	남양주 불암산 일원
	7.19~8.3	2019 경기도청소년 국제산악문화 체험단 「오지탐사 희망원정대」 탐사대원:총40명, 단장2명,대장2명 지도위원 9명, 대원25명, 지원대2명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 몽골 알타이 타왕복드산
	10/5~6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 남자 일반부 리드부문 3위 윤신영 (더클라임)	중랑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11/1	경기도산악연맹 제 1, 2대 회장 이.취임식	회장 백명기
	11/10	제11회 대한체육회장배 및 2019 제주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제주 한라산 관음사 일원
	12/7	경기도산악연맹 산악인의 밤	시흥 시민체육관
<hr/>			
2020	1/11~12	2020 특별산행	경북 청송 해월봉
	1/18~19	2020 동계체전 : 종합3위 여자일반부 난이도 1위: 정운화 2위: 김정민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6/27~28	제11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도내 36명 출전, 무관중 경기	전북 군산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10월~12월	2020 오르樂 내리樂 :건강한 산악문화 교육사업	수원클라이밍교실 안양 김종헌클라이밍 교실
	10월~11월	2020년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남양주 인공암벽장 수원광교호수공원 인공암벽장 광명 인공암벽장
	12월30일	경기도산악연맹 통합 3대 회장 선출	백 명 기 회장
2021	9/25~27	경기도산악연맹 임원 워크샵	울릉도 성인봉 등반
	10/30~11/1	경기도생활체육동호인 가을콘서트 제주여행	제주 한라산 일원
	11/6~12/5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등산체험 -총7회차 시행	양주 칠봉산 치마루 자연암장
	11/14	제5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 남자모범상 수상	경북 문경새재 일원
	11/21	제30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무관중 대회 - 전국 16개 시도 155명 출전 - 리드부문 총 24개 시상, 스피드부문 총12개 시상	광명시민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12/18~19	2021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무관중 대회	오산시 오산스포츠센터 실내 암벽장
	7월~12월	2021오르樂 내리樂 : 건강한 산악문화 교육사업	경기도내
2022	2/15	2021년 결산이사회	경기도체육회관
	2/19	생활체육위원회 4차 심판연수	경기도체육회관
	2/19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출전 경기결과 : 리드/여자일반부 2위(정운화), 여자일반부 3위(김혜준) 스피드/여자일반부 2위 (김혜준)	경북 청송
	2/20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 출전- 리드,여자일반부 2위(김혜준/동서울대학교)	경북청송
	2/24	2022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및 신년하례식	경기도체육회관
	3/25~3/27	제42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출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5/28~5/29	전문등산위원회 심판연수	남양주시 인공암벽장
	6/18	2022 회장배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2022 전국체전 경기도대표 선발대회)	안산시 화랑 인공암벽장
	7/3	제4회 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개최 경기결과- 종합우승 :수원시산악연맹 우승: 파주시산악연맹 준우승: 양평군산악연맹/오산시산악연맹 종합3위: 양주시산악연맹/여주시산악연맹	부천시종합운동장
	7/6~7/17	(사)대한산악연맹 60주년 기념 경기도산악연맹 해외원정	알타이산맥 타왕보드 후이퐁봉

7/30~7/31	제13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출전 (2022년도 스포츠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경북 문경	
	제54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 전국 17개 시도 총126팀 참가		
9/25	경기결과 - 종합1위 대구시산악연맹 종합2위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종합3위 경기도산악연맹	이천 설봉산 일원	
9/29	2022년도 제4차 이사회 개최	경기도체육회관	
10/7~10/9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등산대회 겸 제1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등산대회 출전		
10/23	경기결과-종합우승 경기도 오산연맹팀 1위 경기도 부천연맹팀 2위 경기도 수원연맹팀 화목상 경기도 파주연맹팀	제주 한라산	
10/30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개최	용인 자연휴양림	
11/12	제31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출전	제주도 제주오름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11/13	2022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개최	오산시 필봉산 일원	
11/19	체육진흥공모사업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유비무환 안전산행 캠페인] 실시	북한산성 일원	
12/17	2022 드라이틀링대회 출전	경북 청송	
2023	1/7~1/8	2023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출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2/8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5차 이사회	경기도체육회관
	2/12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시산제	하남시 검단산 총흔담
	2/15	202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및 신년하례식	경기도체육회관
	2/17~2/18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출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3/10~3/20	2023년 경기도산악연맹 5070실버 원정대 출정	네팸 히말라야 랑탕
	4/7~4/9	제43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출전	강남구 대치동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3/18,3/25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심판 연수(신규)	경기도체육회관
	3/25~26 4/15~16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루트세터 연수(신규)	경기도체육회관 클럽클라이밍(볼더링장)
	4/29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출전	경북 상주시 비봉산 일원
	6/1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6차 이사회	경기도체육회관
	6/24~6/25	2023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겸 도대표선발대회)	안산 화랑공원 인공암벽장 안산 클럽클라이밍
	7/9	2023년도 3개 시도 합동산행 실시	실미도 하나개해수욕장
	8/20	제5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개최	양평군 용문산 일원 이천 설봉공원 인공암벽장

9/3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산대회 출전	전남 고흥군 운암산 일원
9/7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7차 이사회	경기도체육회관
9/17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개최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
9/23~9/24	제5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출전	경북 포항 내연산 일원
9/24	제1회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양주시 인공암벽장
10/13~10/15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10/29	제32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광명시민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12/9	2023 전국 드라이틀링대회 출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I. 전차회의록

II. 각종 현황

III. 2023년도 사업실적 요약

IV.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V. 감사보고

I .

전차회의록

1. 2023년도 정기총회 전차회의록

■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1:00

■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의 장 : 백명기 회장

대의원 : 김차년(등산교육원장), 소재훈(가평군회장), 유혁재(광명시회장), 이경원(구리시회장), 권영만(부천시회장), 정기호(성남시회장), 김선국(시흥시회장), 이병권(안산시회장) 김대길(안성시회장), 오기형(양평군회장), 이송복(연천군회장), 이상철(용인시회장) 임광빈(이천시부회장-대리인), 강병천(파주시회장), 조천행(포천시회장), 임춘식(하남시회장)

사 회 : 홍기섭 전무이사

기 록 : 김혜영 사무과장

■ 개회선언 : 백명기 회장(14:10)

■ 국민의례 : 참석자 일동

■ 성원보고

사 회 자 : 2023년 경기도산악연맹 대의원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26명의 재적 대의원 중 16명 참석으로 성원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 의장인사 : 먼저 시작에 앞서 전무님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박연준 전무님께서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를 맡게 된 홍기섭 전무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 홍기섭 전무이사 :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내빈소개: 오늘 참석하신 대의원 및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의장인사 : 지난 해 총회를 할 때만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마음졸이며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마음편히 마스크벗고 총회를 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올 한해는 경기도체전에 우리 산악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해이기도 하는 만큼 우리 시.군산악연맹 회장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연혁소개

사회자 : 경기도산악연맹 연혁보고가 있습니다.

의안집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 없으면 보고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회자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차회의록, 두 번째 각종 현황, 세 번째 2022년도 사업실적 요약, 네 번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다섯 번째 각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여섯 번째 감사보고까지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 장 : 네, 보고 사항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1) 전차회의록 낭독

사회자 : 전차회의록은 의안집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입니다.
의 장 :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전차회의록에 이상이없나 확인부탁드립니다.
의 장 : 전차회의록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대의원 : 이의없이 전원 동의

2) 각종 현황

사회자 : 다음은 각종 현황은 의안집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 장 : 내용에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대의원: 의견있습니다. 전문등산위원회 현황중 정운태씨가 성남시로 되어있는데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나 이런 걸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연맹에 있는 주소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지가 없다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 장 : 참고로 지금 의안집에 각 위원회별 명단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회장님들께서 추천서 없는 대의원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회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24페이지를 보시면 김정배 부회장님에게 업무정지라는게 나와 있을겁니다. 궁금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셔서 3년차까지 회비미납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 차후 회비납부는 충분히 하실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 일단 업무정지로 올려 놓았습니다.
의 장 : 이상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대의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각종 현황에 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대의원 : 이의없이 전원 동의

3) 2022년도 사업실적 요약

사회자 : 2022년도 사업실적 요약은 의안집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 장 : 네, 2022년도 사업실적 요약 상정하겠습니다. 팡팡팡.
의 장 : 내용에 의견 있으십니까?
하남시대의원 : 대통령기는 아직 미정인데 지금 발표돼야 되지 않을까요?
의 장 : 죄송합니다. 17개 시도에서 대통령기 대회를 솔직한 말씀대로 안 가져갈라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그래서 대산연에서는 지금 생활체육하고 같이 묶으려고 합니다. 전문 등산만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사)대산연 위원회가 21개 위원회에서 16개 위원회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돼서 일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밑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산연 이사회에서 좀 다룰 것 같습니다.(중략)
가평군대의원 : 그럼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지요?
의 장 : 네... 아직 미정입니다.
의 장 : 이상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대의원 : 네. 없습니다.
의 장 : 사업실적요약에 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대의원 : 이의없이 전원 동의

4)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사회자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의안집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의 장 : 네,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상정하겠습니다. 땅땅땅.

의 장 : 내용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대의원 :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공지가 미리미리 안되구 임박해서 나오구 했는데...올해는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의 장 : 도지사기 대회는 올해 다시 공모에 선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일정이 나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대의원 : 지난 대한체육회장배 등산대회 참가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도지사기 우승팀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그당시 부천연맹은 주최연맹으로 참여하였고, 파주시연맹과 수원시연맹이 우승팀으로 참석하였고, 오산시연맹은 제주에서 직접 초대하여 모든 비용을 자부담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대의원 : 그렇다고 종합우승을 오산팀이 가져가는 건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의 장 : 주최하였던 제주연맹도 코로나로 인하여 워낙에 사람이 없고, 오산연맹이 매년 우승을 하다보니, 매년 개별 연락하여 출전시키고, 통합적으로 우승을 주게된 것 같습니다.

조병목부회장: 회장님들께서 내용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대한체육회장배 등산대회는 시.군연맹이나, 단위산악회등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우리연맹에서는 도지사기 우승팀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었기에 도지사기 개최하였던 부천시연맹과 우승팀인 파주와, 수원까지 지원경비를 나눠쓰게 하였던 거 였습니다.
(중략)

의 장 :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용인시대의원 : 의안집 31페이지 예산계획안에 나와있는 내용중 청소년 오지탐사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겁니까?

의 장 : 의회 의원하고 사전 이야기는 있었으나, 본예산에 편입은 되어있지 않고, 추경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차후 결정이 난후에 회장님들과 다시한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대의원 : 없습니다.

의 장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5) 각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제정

사회자 : 다음은 각 위원회 규정 개정 및 제정입니다. 의안집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의원 :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 장 :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산연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병목부회장 잠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자문기구 이므로 직접 실행할 수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총회라는 회의문구를 사용할 수 없고, 각 시.군회장님의 추천서가 없는 위원은 활동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중략)

시군연맹 임원의 직제를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직제와 같이 통일 시켜주시면 각 위원회 위원으로 그대로 추천 해주시면 위원 구성이 수월하실 겁니다.

양평군대의원 : 우리 양평연맹에서 추천하지 않은 심판이 심판활동을 하는데,, 양평연맹 대회에서는 경기도 연맹 심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의 장 : 회장님께서 경기도연맹 위원회 심판을 기용하고 ,안하고는 회장님의 재량이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심판은 위원이 아니라서, 그 자격에 관련한 사항은 지켜줘야 합니다.

조병목부회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에서 추천한 위원이 도 위원으로써 심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자격보유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심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중략)

그렇기에 각 시.군의 위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심판은 기용하지 않도록 재량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부천시대의원: 그럼 심판은 추천서 없이도 계속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병목부회장: 아니요. 심판의 임기는 2년이고, 심판자격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시.군의 추천서를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심판자격증이라는 것이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행사에 기용하는 것은 위원회 재량이니, 각 시.군연맹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위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흥시대의원: 중요한건 지역연맹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포천시대의원: 조병목부회장의 의견에 찬성하며, 앞으로 규정대로 잘 운영부탁드립니다. (중략)

안산시대의원: 시군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연맹 위원회 활동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생각합니다.

조병목부회장: 직전 이사회에서 하반기 위원의 추천서를 일괄적으로 받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반기 위원은 반드시 추천서를 받은 사람만 위원으로 명단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 장 : 규정대로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대의원: 전문등산위원회 규정에 보면 시.군대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 장 : 예. 맞습니다. 하여, 하남시연맹 임춘식회장님과, 남양주연맹 박철호회장님은 전문등산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남시대의원: 정식적인 위원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 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명단에 올리시는 건 안되니,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 장 :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대의원 : 없습니다.

의 장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6) 감사보고

사회자 : 다음은 감사보고입니다. 감사보고는 이수영 감사님께서 보고하여주셔야 하지만, 오산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발령으로 사임하셨기에, 대의원중에 감사님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의원 : 의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이 전원동의)

의 장 : 차후 감사님 추천에 대한 위임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보고는 53페이지입니다.

의 장 :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대의원 : 없습니다.

의 장 : 감사보고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 심의사항

사회자 : 다음은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사항 안건으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임원선임(안), 규약변경(안), 가맹회원단체
가맹 해지의 건(안) 입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심의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팡팡팡

1)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사회자 : 1호 의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은 56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내용에 질문 사항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대의원 : 없습니다. (이의 없이 전원 동의)

2) 임원선임(안)

사회자 : 다음은 2호의안 임원선임(안)입니다. 의안집 69페이지 입니다.

의 장 : 우선 대의원중에 감사님을 추천해주시구요, 임원의 직위 변동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스키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수 위원의 선임(안)등이 있습니다.

부천시대의원 : 감사님으로 양주시 이구범 회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의원 : 좋습니다. 나머지 임원선임은 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이 전원 동의) ,

의 장 : 제2호의안 임원선임(안)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3) 규약변경(안)

사회자 : 다음은 3호의안 규약변경(안)입니다. 의안집 71페이지에서부터 96페이지까지 입니다.

성남시의대의원 : 밑줄쳐진 부분만 변경된건가요?

의 장 : 네 그렇습니다. 대신연 규정을 준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조금전 규약 개정(안)에서 회장님들과 토론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시의대의원: 의안집 80페이지 임원의 구성에 보면 감사가 2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뭔가요?

조병목부회장: 네. 감사는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은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이어야
합니다. 회장님들께서 추천해주실 분이 계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네... 현재 공석으로 공인회계사님 섭외가 힘이드네요..

의 장 : 규약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대의원 : 없습니다.

의 장 : 규약변경(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팡팡.

4) 가맹회원단체 가맹 해지의 건(안)

사회자 : 가맹회원단체 가맹 해지의 건(안)입니다.

의 장 : 고양시연맹의 해지의 건(안)입니다.

회비미납건으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회비미납건으로 총회안건으로 다루어 유예기간도 주고, 일부 회비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또 다시 3년이나 회비가 미납되어 있고, 해당 시에 임차료등 큰 금액이 미납되어 당분간 회생이 어렵다 사료되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가평군대의원: 그럼 현재 회장은 공석인건가요?

의 장 : 네... 전임 회장님이 현직의사이셨는데 , 활동을 전혀 안하십니다. 어느시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인데 안타깝습니다.

시흥시대의원 : 우선은 해지하시구요, 차후에 좋은 회장님과 조직이 결성되면 다시 가맹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대의원: 동의 합니다. (이의없이 전원동의)

의 장 : 네. 재가입시에는 밀린 회비가 완납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에 고양시체육회에 해지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맹회원단체 가맹 해지의 건(안)은 의결되었습니다. 팡팡팡

■ 기타사항

사회자 :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 장 : 기타사항으로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산시대의원 : 안산시 이병권회장입니다. 총회에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참석을 같이 하면 차기 연맹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의 장 : 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발언권이 없을 뿐, 참관은 가능합니다.

대의원 :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는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대의원 : 이상 없습니다. (전원일동)

■ 폐 회 :

의 장 :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정기총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 : 15:40 분

1. 임원 현황
2. 위.촉위원 현황
3. 시·군연맹 현황
4. 생활체육위원회 현황
5. 전문등산위원회 현황
6. 안전대책위원회 현황
7.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현황
8. 심판 현황
9. 시·군연맹 회비납부 현황
10. 임원 회비납부 현황

1. 경기도산악연맹 임원 현황

2024. 2.15.일 기준

NO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회 장	백 명 기	010-9240-5980	
2	부 회 장	김 두 일	010-2482-1687	
3	부 회 장	김 성 숙	010-8796-5517	
4	부 회 장	이 재 도	010-5257-8945	
5	부 회 장	이 기 수	010-4644-0858	
6	부 회 장	정 준 모	010-5344-8915	
7	부 회 장	조 세 연	010-8212-4781	
8	사무국장	홍 기 섭	010-5329-3663	
9	기획 이사	고 운 철	010-5250-6885	
10	생활체육 이사	남 기 석	010-6356-2937	
11	재무 이사	문 은 숙	010-5050-5884	
12	안전대책 이사	김 종 대	010-6363-2031	
13	스포츠클라이밍 이사	서 종 국	010-9036-5140	
14	청소년 이사	신 교 완	010-3938-3403	
15	학술문화 이사	신 현 두	010-5524-4741	
16	전문등산 이사	민 강 식	010-4579-4583	
17	산악스키 이사	이 재 수	010-2020-3457	
18	심판 이사	이 형 근	010-5258-9459	
19	환경보존 이사	정 승 식	010-3738-6181	
20	교육기술 이사	조 병 목	010-8702-1109	
21	이 사	권 오 석	010-3310-6665	
22	이 사	김 미 란	010-8982-1178	
23	이 사	김 종 현	010-3782-4719	
24	이 사	김 원 규	010-3742-1369	
25	이 사	민 경 자	010-6336-2150	
26	이 사	민 태 황	010-3413-0815	
27	이 사	이 재 준	010-5511-0570	
28	이 사	한 만 규	010-6261-5335	
	사무과장	김 혜 영	010-9014-2664	

2. 위.촉위원 현황

2024. 2.15.일 기준

NO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명예회장	김 덕 진	010-2626-0005	
2	고 문	김 순 배	010-4281-2081	
3	고 문	남 상 익	010-5332-9591	

3.

시.군연맹 현황

2024. 2.15.일 기준

NO	지역	성명	연락처	이메일
1	가평군산악연맹	소재훈	010-5379-7551	sohun65@naver.com
2	광명시산악연맹	유혁재	010-9481-4381	yhj8949@naver.com
3	구리시산악연맹	이경원	010-5330-4828	LKw4828@hanmail.net
4	군포시산악연맹	이강섭	010-5343-0702	ks82ton@hanmail.net
5	남양주시산악연맹	박철호	010-5318-5140	chp0510@hanmail.net
6	동두천시산악연맹	김중규	010-6272-7129	dkrekd61@hanmail.net
7	부천시산악연맹	권영만	010-5242-5168	pw630714@hanmail.net
8	성남시산악연맹	정기호	010-5213-9545	ghj5707@hanmail.net
9	수원시산악연맹	정국현	010-3771-5336	5336jkh@naver.com
10	시흥시산악연맹	김선국	010-5227-9509	bmh2155@hanmail.net
11	안산시산악연맹	이병권	010-5258-5254	hope03255@korea.com
12	안성시산악연맹	김대길	010-8973-9162	ikor653@naver.com
13	양주시산악연맹	이구범	010-9080-9752	gubum71@hanmail.net
14	양평군산악연맹	오기형	010-9740-1295	ypokh1295@hanmail.net
15	여주시산악연맹	안재훈	010-8607-2929	na76477647@hanmail.net
16	연천군산악연맹	이송복	010-8722-7218	crystal1775@hanmail.net
17	오산시산악연맹	고흥달	010-6250-0782	khd2504@naver.com
18	용인시산악연맹	이상철	010-8626-0447	dosk2370@goe.go.kr
19	의정부시산악연맹	조영욱	010-4706-2728	choyo2728@naver.com
20	이천시산악연맹	최용관	010-5231-7046	timespace@hanmail.net
21	파주시산악연맹	강병천	010-7196-1142	kangsamtaek@gmail.com
22	평택시산악연맹	강길모	010-5352-1413	118km@hanmail.net
23	포천시산악연맹	조천행	010-3741-9077	cheonhang@naver.com
24	하남시산악연맹	임춘식	010-5260-6507	lcs65070@hanmail.net
25	화성시산악연맹	류무형	010-3754-3537	rmh0517@hanmail.net

4. 생활체육위원회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 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원장	남 기 석	부천시	
2	감 사	박 진 희	수원시	
3	부위원장	박 수 남	양주시	
4	재 무	박 서 정	고양시	
5	훈련대장	심 규 생	성남시	
6	훈련대장	이 경 수	오산시	
7	운영팀장	이 주 화	수원시	
8	위 원	최 봉 이	용인시	
9	위 원	전 춘 호	광명시	
10	위 원	배 갑 례	하남시	
11	위 원	김 정 옥	안산시	
12	위 원	김 민 영	여주시	
13	위 원	이 윤 근	양평군	
14	위 원	강 금 애	평택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 전문등산위원회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 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원장	민 강 식	안산시	
2	부위원장	이 지 현	용인시	
3	부위원장	박 은 주	수원시	
4	사무장	한 영 효	양주시	
5	감 사	김 영 기	하남시	
6	위 원	이 순 성	남양주시	
7	위 원	정 영 균	수원시	
8	위 원	주 형 옥	안산시	
9	위 원	이 윤 규	수원시	
10	위 원	이 재 만	포천시	
11	위 원	백 연 옥	하남시	
12	위 원	심 우 영	이천시	
13	위 원	류 현 관	수원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6. 안전대책위원회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 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원장	김 종 대	이천시	
2	부위원장	이 범 호	화성시	
3	위 원	김 봉 수	파주시	
4	위 원	이 후 현	광명시	
5	위 원	정 영 호	남양주시	
6	위 원	김 대 린	안산시	
7	위 원	최 유 란	용인시	
8	위 원	김 지 훈	성남시	
9	위 원	이 병 철	여주시	
10	위 원	김 현 주	이천시	
11	위 원	소 양 수	화성시	

소 위원회 현황 (경기구조대)

순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경기구조대	임 정 호	이천시	
2	경기구조대	송 의 준	이천시	
3	경기구조대	이 광 수	화성시	
4	경기구조대	이 병 만	화성시	
5	경기구조대	강 영 미	화성시	
6	경기구조대	김 준 학	화성시	
7	경기구조대	현 병 우	화성시	
8	경기구조대	강 상 훈	화성시	
9	경기구조대	김 동 현	화성시	
10	경기구조대	손 은 주	용인시	
11	경기구조대	이 지 현	용인시	

7.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 번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서 종 국	경기연맹	
2	사무장	전 소 영	경기연맹	
3	위 원	양 민 규	수원시	
4	위 원	장 석 환	경기연맹	
5	위 원	박 혁 기	경기연맹	
6	위 원	김 성 윤	이천시	
7	위 원	이 상 정	이천시	

소 위원회 현황

순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아이스클라이밍 루트세터 1급	김 종 현	경기연맹	
2	루트세터1급	한 만 규	경기연맹	
3	루트세터 3급	이 재 준	파주시	
4	확 보	민 태 황	경기연맹	

8.

심판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번	직위	성명	구분	소속
1	위원장(1급심판)	이형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2	1급심판	장석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3	2급심판	박민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4	2급심판	박유영	스포츠클라이밍	수원시
5	2급심판	송동호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6	2급심판	이주홍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7	3급심판	노미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8	3급심판	박혜련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9	3급심판	오명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10	3급심판	제헌정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연맹
11	1급심판	제환철	전문등산	광명시
12	1급심판	김대숙	전문등산	이천시
13	2급심판	김범수	전문등산	오산시
14	2급심판	김원규	전문등산	수원시
15	3급심판	이종규	전문등산	광명시
16	3급심판	김광수	전문등산	양주시
17	3급심판	조영우	전문등산	파주시
18	3급심판	김주식	전문등산	포천시
19	3급심판	김은순	전문등산	수원시
20	3급심판	백연옥	전문등산	하남시
21	3급심판	손은주	전문등산	용인시
22	3급심판	최유란	전문등산	용인시
23	3급심판	안호선	전문등산	안산시
24	3급심판	이병춘	전문등산	남양주시
25	3급심판	이서련	전문등산	남양주시
26	3급심판	정영호	전문등산	남양주시
27	3급심판	이성미	전문등산	남양주시
28	3급심판	이용재	생활체육	성남시
29	3급심판	강문자	생활체육	부천시
30	3급심판	최금원	생활체육	하남시
31	3급심판	이상분	생활체육	양주시
32	3급심판	김옥난	생활체육	용인시
33	3급심판	김정옥	생활체육	안산시
34	3급심판	신경화	생활체육	광명시
35	3급심판	이명화	생활체육	양평군
36	3급심판	이상남	생활체육	여주시
37	3급심판	정영춘	생활체육	오산시
38	3급심판	김경숙	생활체육	용인시
39	3급심판	박형순	생활체육	오산시
40	3급심판	김진희	생활체육	용인시
41	3급심판	우종우	생활체육	파주시
42	3급심판	이미숙	생활체육	고양시
42	3급심판	지정옥	생활체육	오산시

9. 시·군연맹 회비 납부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번	시군연맹	회장	납부현황	비고
1	가평군	소재훈	납부완료	
2	광명시	유혁재	납부완료	
3	구리시	이경원	납부완료	
4	군포시	이강섭	납부완료	
5	남양주시	박철호	납부완료	
6	동두천시	김중규	납부완료	
7	부천시	권영만	납부완료	
8	성남시	정기호	미납	
9	수원시	정국현	납부완료	
10	시흥시	김선국	납부완료	
11	안산시	이병권	납부완료	
12	안성시	김대길	납부완료	
13	양주시	이구범	납부완료	
14	양평군	오기형	납부완료	
15	여주시	안재훈	납부완료	
16	연천군	이송복	납부완료	
17	오산시	고흥달	납부완료	
18	용인시	이상철	납부완료	
19	의정부시	조영욱	납부완료	
20	이천시	최용판	납부완료	
21	파주시	강병천	납부완료	
22	평택시	강길모	납부완료	
23	포천시	조천행	납부완료	
24	하남시	임춘식	납부완료	
25	화성시	류무형	납부완료	

10. 임원회비 납부 현황

2024. 2.15.일 기준

순번	직책	성명	납부현황	비고
1	회장	백명기	납부완료	
2	부회장	이재도	납부완료	
3	부회장	이기수	납부완료	
4	부회장	정준모	납부완료	
5	부회장	김성숙	납부완료	
6	부회장	조세연	납부완료	
7	부회장	김두일	납부완료	
8	전무이사	홍기섭	납부완료	
9	기획이사	고운철	납부완료	
10	안전대책이사	김종대	납부완료	
11	교육기술이사	조병목	납부완료	
12	생활체육이사	남기석	납부완료	
13	재무이사	문은숙	납부완료	
14	전문등산이사	민강식	납부완료	
15	스포츠클라이밍이사	서종국	납부완료	
16	청소년이사	신교완	납부완료	
17	학술문화이사	신현두	납부완료	
18	경기력향상이사	양민규	납부완료	23.12.22 사임
19	산악스키이사	이재수	납부완료	
20	심판이사	이형근	납부완료	
21	환경보존이사	정승식	납부완료	
22	이사	권오석	납부완료	
23	이사	김미란	납부완료	
24	이사	김종현	납부완료	
25	이사	김원규	납부완료	
26	이사	민경자	납부완료	
27	이사	민태황	납부완료	
28	이사	박홍종	납부완료	24. 1. 5 사임
29	이사	이윤석	미납	23. 6. 30 사임
30	이사	장정문	미납	23. 12. 5 사임
31	이사	전소영	납부완료	23. 8. 30 사임
32	이사	한만규	납부완료	

Ⅲ.

2023년도 사업실적 요약

1. 2023년도 사업실적 요약

1) 2023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1월 7일(토) ~ 8(일) [2일간]

나: 장 소 :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2)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5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10층 대회의실

3)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시산제 개최

가: 일 시 : 2023년 2월 12일(일)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하남시 검담산 충혼탑

4) 202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및 신년하례식

가: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나: 장 소 : 경북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센터 경기장

5)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 18일(토) [2일간]

나: 장 소 :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6) 2023년 경기도산악연맹 해외원정

가: 원정대명 : 20023년 경기도산악연맹 5070실버 원정대

나: 일 시 : 2023년 3월 10일(금) ~ 3월 20일(월) [12일간]

다: 대 상 지 : 네팔 히말라야 랑탕

라: 주 최 :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7) 제43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4월 7일(금) ~ 9일(일) [3일간]

나: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심판연수 (신규)

가: 일 시 : 2023년 3월 18일(토), 3월 25일(토)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9)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루트세터 연수 (신규)

가: 일 시 : 2023년 3월 25일(토) ~ 26일(일) [2일간]
2023년 4월 15일(토) ~ 16일(일)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회의실/ 볼더링장(클럽클라이밍)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공암벽장

10)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4월 29일(토) 8시 00분 ~ 14시 30분
나: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비봉산 일원

11)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6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10층 대회의실

12) 2023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개최(겸 도대표선발대회)

가: 일 시 : 2023년 6월 24일(토) ~ 25일(일) [2일간]
나: 장 소 : 안산 화랑공원 인공암벽장/안산 클럽클라이밍

13) 2023년도 3개시도 합동산행

가: 일 시 : 2023년 7월 9일(일) 오전 9시
나: 장 소 : 실미도 하나개해수욕장

14) 제5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8월 20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소 : 이천 설봉공원 인공암벽장

15)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9월 3일(일)

나: 장 소 : 전라남도 고흥군 운암산(487m) 일원

16)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7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10층 대회의실

17)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9월 17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

18) 제5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9월 23일(토) ~ 24일(일) [2일간]

나: 장 소 : 경상북도 포항 내연산 일원

19) 제1회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9월 24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인공암벽장

2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 15일(일) [2일간]

나: 장 소 :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21) 제32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10월 29일(일)

나: 장 소 :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22) 2023 전국 드라이틀링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12월 9일(토)

나: 장 소 :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IV.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 2024년도 사업계획

NO	주 최	사 업 명	기 간	장 소	비고
1	대한산악연맹	2024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6~1.7	경북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	
2	대한산악연맹	2024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및 특별산행	1.13~14	경북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	
3	경기도연맹	2024 경기도산악연맹 제9차 결산이사회	1.24(수)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4	경기도연맹	생활체육위원회 심판연수 (신규 및 보수)	1.20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5	경기도연맹	202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신년하례식	2.20(화)	경기도체육회관 10층대회의실	
6	대한체육회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2.24~25일	경북청송 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	
7	경기도산악연맹	2024 경기도산악연맹 해외원정	7.17~30(14일간)	서안-감숙성/신강위구르	
8	경기도연맹	2024 경기도산악연맹 시산제	3.1(금)	관악산 석수헬기장	
9	대한산악연맹	제45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3.22~24		
10	경기도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 심판연수 (신규 및 보수)	4월중		예정
11	경기도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루트세터 연수(신규)	4월중		예정
12	경기도산악연맹	제2회 경기도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4월중		예정
13	대한체육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4.27	울주군 신불산일원	
14	경기도산악연맹	제3회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대표선발경)	5, 6월중		예정
15	경기도체육회	제70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5.11	양주시 인공암벽장	파주
16	대한산악연맹	제15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6월중		
17	대한산악연맹	제56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미정		
18	경기도체육회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9.27~9.29	성남시	
19	대한산악연맹	제33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9,10월중		
20	대한산악연맹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산대회	9월8일	경기도 연천군	
21	대한산악연맹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10.11~10.17	경남 김해	
22	경기도연맹	제6회 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10월27일	경기도 이천	
23	대한산악연맹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등산대회	미정		
24	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 드라이틀링대회	11월중		
25	대한산악연맹	2024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연중		

2. 2024년도 예산계획

총 수입 예산(안)	총 지출 예산(안)
400,000,000	400,000,000

2024년도 수입 예산(안)

NO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1	전기이월	15,905,841	2023년 1월 1일 잔액	15,905,831
2	시.군연맹	13,000,000	· 시.군연맹 500,000 × 26	13,000,000
3	회원단체	720,000	· 단위산약회 120,000 × 6	720,000
4	임원회비	32,500,000	· 회 장 10,000,000 × 1	10,000,000
			· 부회장 2,000,000 × 6	12,000,000
			· 이 사 500,000 × 21	10,500,000
5	체육회	175,549,000	· 사무실 관리비 534,000 × 12	6,408,000
			· 사무실 임대료 345,083 × 12	4,141,000
			· 사무국장 활동비 1,000,000 × 12	12,000,000
			· 행정인력 보조비 1,000,000 × 12	12,000,000
			· 동계체육대회	7,000,000
			· 전국체육대회	18,000,000
			· 전국생활체육대회	20,000,000
			· 교육감배	17,000,000
			· 경기도체육대회	7,000,000
			· 경기도생활체육대회	6,000,000
			· 도지사기	25,000,000
			· 체육진흥공모사업	24,000,000
			· 도대회 개최지원	7,000,000
· 전국대회 개최지원	10,000,000			
6	대산련	8,600,000	· 문체부장관기대회	8,600,000
7	시군체육회	55,000,000	· 도지사기	25,000,000
			· 문체부장관기대회	30,000,000
8	원정관련	70,000,000	· 해외 원정	70,000,000
9	참가비	5,000,000	· 각종 대회 및 행사	5,000,000
10	연수비	15,000,000	· 각 위원회 심판연수 및 강습	15,000,000
11	후원금	8,725,159	· 각종 후원 및 기타	8,725,159
총 계			400,000,000	

2024 사업비 및 경상비 지출 예산(안)

구분	항 목	금 액(원)	산 출 근 거	비고	
사업비	정기총회	2,000,000	· 식비, 진행비외	2,000,000	
	전국대축전	20,000,000	· 교통비, 체재비외	20,000,000	
	경기도체육대회	7,000,000	· 심판비, 운영비외	7,000,000	
	경기도대축전	6,000,000	· 심판비, 운영비외	6,000,000	
	전국체전	18,000,000	· 훈련비 교통비, 체재비외	18,000,000	
	전국동계체전	7,000,000	· 훈련비 교통비, 체재비외	7,000,000	
	도지사기 대회	50,000,000	· 종합등반 대회	50,000,000	
	교육감배	17,000,000	·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17,000,000	
	문체부장관기 전국등산대회	50,000,000	· 사업추진 및 개최비	50,000,000	
	전국대회 출전	6,000,000	· 교통비, 체재비외	6,000,000	
	체육진흥공모사업	24,000,000	· 사업추진 및 개최비	24,000,000	
	임원연수	2,000,000	· 숙식 및 진행비	2,000,000	
	각 위원회연수	15,000,000	· 심판연수 진행	15,000,000	
	해외월정	70,000,000	· 월정경비	70,000,000	
	위원회 운영지원	4,000,000	· 안전대책위원회	1,000,000	
			· 전문등산위원회	1,000,000	
			· 생활체육위원회	1,000,000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1,000,000	
시산제	2,000,000	· 식비, 진행비	2,000,000		
	300,000,000				
소계 ①		300,000,000			
경상비	사무실운영비	34,516,420	· 사무실관리비	534,000 × 12	6,408,000
			· 사무실임대료	345,083 × 12	4,141,000
			· 사무국장 활동비	1,000,000 × 12	12,000,000
			· 행정인력 보조비	1,000,000 × 12	12,000,000
			· 급여	1,700,000 × 12	20,400,000
	인건비	26,100,000	· 4대보험료	250,000 × 12	3,000,000
			· 퇴직연금	225,000 × 12	2,700,000
			· 이사회 식대	400,000 × 4회	1,600,000
	회의비	2,400,000	· 상임이사회 식대	200,000 × 4회	800,000
			· 업무추진비	10,000,000	10,000,000
	경조사비	2,000,000	· 근조화, 화환 외	2,000,000	
	판공비	5,000,000	· 회장표창시상품 외	100,000 × 50	5,000,000
	연회비	600,000	· 대산연 연회비	300,000 × 1	300,000
			· 사무국장 연회비	300,000 × 1	300,000
	사무용품(소모품)	3,000,000	· 사무용품		1,500,000
			· 음료, 잡화		1,500,000
	통신비	1,540,000	· 우편발송		300,000
			· 통신비		800,000
			· 홈페이지 관리비		440,000
	도서인쇄비	1,324,000	· 명함, 사무용품외		1,000,000
· 경기일보			15,000 × 12	180,000	
· 산지 구독료			12,000 × 12	144,000	
관리 및 수선비	1,000,000		1,000,000		
감독코치 파견비	2,000,000		2,000,000		
도로교통비	1,000,000		1,000,000		
세금과 공과	300,000		300,000		
비품 / 장비	3,000,000		3,000,000		
예비비	6,219,580		6,219,580		
소계 ②		100,000,000			
총 계(①+②)		400,000,000			

V.

감사보고

1.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경기도 산악연맹 규약 제24조 및 제51조에 의거 2023년 회계연도(2023.01.01.~2023.12.31.) 회계 및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01.23.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정운영 현황

수입액	지출액	차기이월	비고
403,455,247원	404,268,631원	15,905,841원	

회계감사는 감사 회계 보고서에 의하여 수입, 지출의 적정성을 감사 하였고, 행정 감사는 일부 사업을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결산의 적정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 의견

1. 회계 부분은 수입, 지출 결산서 등을 구분하여 규정에 맞게 일목 요연 하게 정리되어 적정하다고 판단 합니다.
2. 회계 감사는 신뢰를 위하여 규약 22조에 의한 회계 감사 선임이 필요하고 규약 제 50조 및 51조에 의한 회계 처리를 결산서 홈페이지 게재를 권고 합니다.
3. 행정 부분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생활 대축전 등산대회 시상부분에 대하여 1부, 2부 시상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다른 종목도 1부, 2부 시상이 구분 되어 있건만 참가 인원이 제일 많은 등산 부분이 나뉘 있지 않아 시상에 불리 함이 있어 본연맹에서는 경기도 체육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3.

(사) 대한 산악연맹 경기도 연맹 감사 이구범



▷ 심의사항

I.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II. 임원선임(안)

III. 2024년도 사업 주관신청(안)

IV. 회원단체 가맹승인(안)

1. 사업실적 결산(안)
2. 수입·지출 총괄표
3. 월별 수입 내역
4. 월별 지출 내역

1. 사업실적 결산(안)

1) 2023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1월 7일(토)~8(일) 2일간
나: 장 소 :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다: 출 전 : 남자일반부 : 정옥영, 최소열, 민태황, 양민규
여자일반부 : 김혜준, 이상미, 김진아, 이순영

2)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5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다: 참 석 자 : 32명의 재적 임원중 20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의 장 : 백명기 회장
대 의 원 : 김성숙(부회장), 이재도(부회장), 이기수(부회장), 정준모(부회장)
조병목(부회장), 조세연(부회장), 홍기섭(전무이사), 남기석(생활체육이사)
문은숙(재무이사), 김종대(안전대책이사), 신교완(청소년이사)
민강식(전문등산이사), 이형근(심판이사), 정승식(환경보존이사)
권오석(이사), 김미란(이사), 민경자(이사), 민태황(이사), 박홍종(이사)
사무국장 : 홍기섭
사무과장 : 김혜영

3)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시산제 개최

가: 일 시 : 2023년 2월 12일(일)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하남시 검단산 총흔탑
다: 참석 및 후원 : 백명기(회장), 이기수(부회장), 정준모(부회장), 조세연(부회장), 이재도(부회장)
김성숙(부회장), 홍기섭(전무이사), 조병목(이사), 문은숙(이사),
고운철(이사), 김종대(이사), 남기석(이사), 민강식(이사), 김혜영(사무과장)
구리연맹 이경원회장, 남양주연맹 박철호회장, 동두천연맹 김중규회장
부천연맹 권영만회장, 성남연맹 정기호회장, 양주연맹 이구범회장
양평연맹 오기형회장, 용인연맹 이상철회장, 이천연맹 최용판 회장

포천연맹 조천행 회장, 하남시연맹 임춘식 회장, 오산드림산악회
남기섭회장등.

4) 202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및 신년하례식

가: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11시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다: 참 석 자 : 26명의 재적 대의원중 16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의 장 : 백명기 회장

대 의 원 : 김차년(경기도등산교육원장), 소재훈 (가평군회장) ,유혁재(광명시회장)
이경원(구리시회장), 권영만(부천시회장), 정기호(성남시회장)
김선국(시흥시회장), 이병권(안산시회장), 김대길(안성시회장)
오기형(양평군회장), 이송복(연천군회장), 이상철(용인시회장)
임광빈(이천시부회장), 강병천(파주시회장), 조천행(포천시회장)
임춘식(하남시회장)

<참관인> 김흥수(의정부시연맹 자문단장), 임성록(파주시연맹 사무국장)
전용대(안산시연맹 수석부회장)

사 회 : 홍기섭

기 록 : 김혜영

5)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18일(토) 2일간

나: 장 소 : 경북 청송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

다: 출 전 : 남자일반부 : 양민규, 정옥영, 최소열

여자일반부 : 김진아, 김혜준, 이상미

라: 경기결과 : 스피드/여자일반부 은메달 획득(김진아)

6) 2023년 경기도산악연맹 해외원정

가: 원정대명 : 2023년 경기도산악연맹 5070실버 원정대

나: 주 최 :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다: 주 관 :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라: 대 상 지 : 네팔 히말라야 랑탕 Nepal Himalaya Langtang

마: 원정기간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3월 20일 (12일간)

바: 원정대원 : 백명기(단장), 조세연, 김성숙, 조병목, 홍기섭, 김원규
이구범(양주), 한영효(양주), 한훈섭(안산), 장기남(안산)
김의기(가평), 이수희(가평), 김정배(수원), 이해영(수원)
김묘숙(수원), 박혜숙(수원), 윤기선(수원), 심영관(수원), 장미영(수원)
윤천희(수원), 박준범(수원), 정기호(성남)

7) 제43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4월 7일(금) ~ 9일(일) 3일간

나: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다: 출 전 : 남자일반부 : 박석민, 송윤찬, 문성진, 이환, 임홍재, 최민서,
정민수, 신찬우, 박지원, 윤여찬, 김창우, 윤신영, 현솔민,
이지용, 최용준, 이상진, 이민규, 염동화, 박정근, 남대우,
박지환, 최지운

여자일반부 : 오수정, 김혜준, 이해빈, 박희연

라: 경기결과 : 콤바인/남자일반부 3위(송윤찬)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심판연수(신규)

가: 일 시 : 2023년 3월 18일(토), 3월 25일(토)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다: 연수인원 : 총 5명

라: 자격취득 : 5명 노민하(화성), 박혜련(서울), 오명환(시흥), 제현정
조세연(명예심판)

9)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3급 루트세터 연수(신규)

가: 일 시 : 2023년 3월 25일(토) ~ 26일(일) 2일간
2023년 4월 15일(토) ~ 16일(일)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회의실, 볼더링장(클럽클라이밍)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공암벽장

다: 연수인원 : 총 15명

라: 자격취득 : 15명/ 권동철(이천), 김빛(군포), 김유식, 박민지(오산),
백창열(양평), 손재원, 송상민, 신현두(수원)
유재헌(군포), 이덕희(충북), 이상정(이천), 이동섭
이재우(충북), 이재준(파주), 조세연(명예세터)

10)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4월 29일(토) 8시 00분 ~ 14시 30분

나: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비봉산 일원
경천섬공원 야외공연장(경북 상주시 도남동 168-1)

다: 출 전 : 3개시·도 15팀(일반부 8팀/어르신부 7팀)

라: 경기결과 : 종합1위 전북산악연맹
종합2위 경기도산악연맹
종합3위 대구산악연맹

11)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6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다: 참 석 자 : 32명의 재적 임원중 19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의 장 : 백명기 회장

대 의 원 : 이구범 (감사) , 이기수(부회장), 정준모(부회장), 조세연(부회장),
고운철(기획이사), 김종대(안전대책이사)
신교완(청소년이사), 신현두(학술문화이사), 민강식(전문등산이사)
이재수(산악스키이사), 이형근(심판이사), 정승식(환경보존이사)
조병목(교육기술이사), 김원규(이사), 민경자(이사)
민태황(이사), 박홍종(이사)

사무국장 : 홍기섭

사무과장 : 김혜영

12) 2023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검 도대표선발대회)

가: 일 시 : 2023년 6월 24일 ~ 25일(토.일)

나: 장 소 : 안산 화랑공원 인공암벽장 /안산 클럽클라이밍

다: 사업내용

6월 24(토) 볼더경기

=> 전국 남녀 엘리트선수 및 동호인남녀선수 52명 출전

=> 안산소재 클럽클라이밍

6월 25(일) 리드 및 스피드경기

=> 개/폐회식진행 -> 전국 엘리트선수 및 동호인 남녀선수 76명 출전

동호인 리드,볼더-> 총상금 240만원 수여 및 상패와 상장, 시상품 전달

엘리트 리드,볼더,스피드 ->각 부문 메달 및 상장, 시상품 및 제104회

전국체전 도대표선발권 획득

13) 2023년도 3개시도 합동산행

가: 일시 : 2023년 7월 9일(일) 오전 9시

나: 장소 : 실미도 하나개해수욕장

다: 참석 : 백명기(회장), 이기수(부회장), 정준모(부회장), 조세연(부회장)

남상익(고문), 김미란(이사), 민경자(이사), 민강식(이사), 민태황(이사)

신현두(이사), 조병목(이사), 정승식(이사), 심규생(위원), 한영효(위원)

홍기섭(전무이사), 김혜영(사무과장)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이영남 회장외 18명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석채언 회장외 16명

14) 제5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8월 20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소 : 이천 설봉공원 인공암벽장

다: 사업내용

- 일반등산 (총 20개 시·군연맹, 1022명 출전)

=> 1부, 2부 상장과 트로피 전달

=> 가평군연맹, 광명시연맹, 구리시연맹, 군포시연맹, 남양주시연맹, 동두천시연맹
부천시연맹, 수원시연맹, 시흥시연맹, 안산시연맹, 양주시연맹, 양평군연맹
여주시연맹, 연천군연맹, 오산시연맹, 용인시연맹, 의정부시연맹, 평택시연맹
포천시연맹, 하남시연맹

종목	부문	순위	소속
일반등산	전부문	종합우승	양평군산악연맹 C팀
일반등산	1부리그	우승	부천시산악연맹
일반등산	1부리그	준우승	안산시산악연맹
일반등산	1부리그	3위	수원시산악연맹 A팀
일반등산	1부리그	질서상	시흥시산악연맹
일반등산	1부리그	화합상	의정부시산악연맹
일반등산	1부리그	모범상	하남시산악연맹
일반등산	2부리그	우승	오산시산악연맹
일반등산	2부리그	준우승	여주시산악연맹 A팀
일반등산	2부리그	3위	양주시산악연맹 A팀
일반등산	2부리그	질서상	가평군산악연맹
일반등산	2부리그	화합상	구리시산악연맹
일반등산	2부리그	모범상	연천군산악연맹
일반등산	전부문	특별상	용인시산악연맹

- 전문등산 (총 26팀, 78명 출전)

=> 각 부문별 1~3위 상장과 메달 전달

=> 참가자: 장년부 남자 5팀, 장년부 여자 5팀, 장년부 혼성 2팀
일반부 남자 6팀, 일반부 여자 3팀
고등부 남자 5팀

- 스포츠클라이밍 (총 164명 출전)

=> 이천 설봉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진행

=> 중장년부, 장년부 각 부문 1~3위 상장, 상패, 시상품 전달
초등부, 중등부 각 부문 1~3위 상장, 메달, 시상품 전달

=> 참가자 : 초등부 저학년 남자 11명, 여자 9명
초등부 고학년 남자 20명, 여자 17명

중등부 남자 22명, 여자 11명
중장년 남자 20명, 여자 9명
장년부 남자 28명, 여자 17명

15)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9월 3일(일)
나: 장 소 : 전라남도 고흥군 운암산(487m) 일원
다: 출 전 : 부천시산악연맹, 양주시산악연맹 출전
라: 경기결과 : 우수 시·군·구 3위(부천시산악연맹)
1위: 전라남도산악연맹
2위: 서울특별시산악연맹
3위: 인천광역시산악연맹

16) 2023년도 경기도산악연맹 제7차 이사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다: 참 석 자 : 30명의 재적 임원중 17명 참석으로 성원보고
의 장 : 백명기 회장
대 의 원 : 김두일(부회장), 김성숙(부회장), 이기수(부회장), 이재도(부회장)
정준모(부회장), 조세연(부회장),
남기석(생활체육이사), 김종대(안전대책이사), 민강식(전문등산이사)
정승식(환경보존이사), 조병묵(교육기술이사), 권오석(이사), 김미란(이사)
김원규(이사), 박홍종(이사)
사무국장 : 홍기섭
사무과장 : 김혜영

17)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9월 17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
다: 주 최 : 경기도체육회

라: 주 관 :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체육회, 경기도산악연맹

마: 참가인원 : 19개시.군 선수단 및 임원포함 900여명 참여

라: 경기결과

종합우승 ▶ 오산시			
종합준우승 ▶ 양평군			
종합 3위 ▶ 안산시			
모 범 상 ▶ 광명시			
특 별 상 ▶ 이천시			
1부		2부	
우승	수원시	우승	양주시
준우승	부천시	준우승	안성시
3위	시흥시	3위	여주시
질서상	하남시	질서상	연천군
화합상	의정부시	화합상	가평군

18) 제5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9월23일(토)~24일(일) [2일간]

나: 장 소 : 경상북도 포항 내연산 일원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다: 참 석 : 총 28명 (임원2명 , 지도자2명, 선수 24명)

라: 사업내용 : 주마링과 독도법을 이용한 전문등산 대회

마: 주 최 : (사)대한산악연맹

바: 주 관 : 경상북도산악연맹, 포항시산악연맹

사: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상북도, 포항시

아: 경기결과 : 종합1위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종합2위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종합3위 경기도산악연맹

19) 제1회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가: 일 시 : 2023년 9월 24일(일)

나: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인공암벽장

다: 주 최 : 경기도산악연맹

라: 주 관 : 경기도산악연맹/양주시산악연맹

마: 후 원 : 경기도교육청

바: 참가인원: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 142명

사: 경기결과

종 목	참가부문	학교명	학년	등위	성명
리 드	초등저학년부	다산별빛초등학교	3학년	1위	김건후
리 드	초등저학년부	동패초등학교	3학년	2위	박시훈
리 드	초등저학년부	한울초등학교	3학년	3위	임시현
리 드	초등저학년부	다원초등학교	3학년	1위	전이봄
리 드	초등저학년부	본오초등학교	2학년	2위	김채민
리 드	초등저학년부	운광초등학교	3학년	3위	정서하
리 드	초등고학년부	서중초등학교	6학년	1위	김현준
리 드	초등고학년부	산마루초등학교	5학년	2위	박종석
리 드	초등고학년부	상하초등학교	6학년	3위	이도근
리 드	초등고학년부	백양초등학교	6학년	2위	박이안
리 드	초등고학년부	신영초등학교	4학년	3위	이윤아
리 드	중등부	구리중학교	1학년	1위	이하율
리 드	중등부	이현중학교	3학년	2위	박범진
리 드	중등부	산남중학교	1학년	3위	서지환
리 드	중등부	일산중학교	1학년	1위	조윤서
리 드	중등부	평내중학교	1학년	2위	김규린
리 드	중등부	남양주다산중학교	3학년	3위	이가람
리 드	고등부	상현고등학교	1학년	1위	박석민
리 드	고등부	이천제일고등학교	3학년	2위	이지수
리 드	고등부	별내고등학교	3학년	3위	이환
스피드	중등부	이현중학교	3학년	1위	박범진
스피드	중등부	김포신곡중학교	3학년	2위	서현우
스피드	중등부	이현중학교	3학년	3위	김새한
스피드	중등부	남양주다산중학교	3학년	1위	이가람
스피드	중등부	일산중학교	1학년	2위	조윤서
스피드	중등부	평내중학교	1학년	3위	김규린
스피드	고등부	별내고등학교	3학년	1위	이환
스피드	고등부	상현고등학교	1학년	2위	박석민
스피드	고등부	이천제일고등학교	3학년	3위	이지수

2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가: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15(일)

나: 장 소 :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다: 참가종목 : 스포츠클라이밍3개 부문(리드,볼더,스피드)

라: 참여인원 : 총16명(임원3명/감독.코치2명/선수11명)

마: 경기결과

구분	부문	순위	시·도	이름	소속팀
리드경기	남자일반부	1	전북	이도현	래전드클라이밍클럽
		2	대구	민현빈	대구시체육회
		3	광주	이성수	바위클라이밍센터
	여자일반부	1	서울	서채현	서울시청
		2	세종	김자인	발자국산악회
		3	서울	김채영	서울신정고등학교
스피드경기	남자일반부	1	광주	신은철	광주실내암벽
		2	경남	이승범	중부경남클라이밍
		3	제주	이용수	오현등고회
	여자일반부	1	강원	차유진	차클라이밍
		2	서울	성한아름	서울신정고등학교
		3	부산	노희주	부산패밀리산악회
볼더경기	남자일반부	1	경남	천종원	중부경남클라이밍
		2	전북	이도현	래전드클라이밍클럽
		3	광주	김도현	풍암고등학교
	여자일반부	1	서울	서채현	서울시청
		2	부산	노희주	부산패밀리산악회
		3	서울	김승현	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종합순위	종합	1	서울특별시산악연맹		
		2	광주광역시산악연맹		
		3	경상남도산악연맹		

21) 제32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가: 일 시: 2023. 10. 29.(일)

나: 대회장소: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다: 참가인원: 270여명(임원 15명, 지도자 3명, 선수 254명)

라: 사업내용: - 리 드 : 초등부(저)/초등부(고)/중등부/고등부
- 스피드 : 중등부/고등부

마: 주 최: (사)대한산악연맹

바: 주 관: 경기도산악연맹

사: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체육회

아: 경기결과

리 드

구 분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위	경상북도 권수현	부산광역시 김하은	충청남도 김윤규	충청남도 송지연	부산광역시 노현승	부산광역시 정연주	서울특별시 권기범	서울특별시 김채영
2 위	경기도 임시현	전라북도 박하울	충청남도 최정윤	전라남도 노윤서	경기도 이하울	경기도 조윤서	경기도 송윤찬	서울특별시 김주하
3 위	제주특별시 김현준	경상남도 김라희	전라남도 서준서	서울특별시 윤봄	서울특별시 박태성	서울특별시 이서연	인천광역시 이학진	인천광역시 오가영
4 위	전라북도 김민찬	전라북도 오채서	경기도 박종석	전라남도 이승현	서울특별시 정찬진	대구광역시 박나은	광주시 김도현	광주시 정의연
5 위	전라남도 서준호	경기도 전이불	경기도 김현준	부산광역시 김하빈	경기도 조예준	제주특별시 이주아	광주시 송현우	서울특별시 성한아름

스피드

구 분	중등부		고등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위	부산광역시 노현승	강원도 현영주	충청북도 이준우	서울특별시 윤다솜
2 위	전라북도 조진용	경상북도 황지민	강원도 현명진	서울특별시 성한아름
3 위	부산광역시 최상원	부산광역시 정연주	광주시 송현우	광주시 정의연
4 위	경기도 서현우	강원도 함주연	서울특별시 권기범	서울특별시 양희수
5 위	강원도 김우주	경기도 이윤서	경기도 박석민	인천광역시 오가영

22) 2023 전국 드라이틀링대회 출전

가: 일 시: 2023. 12. 9(토)

나: 장 소 :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경북 청송군 부동면)

다: 주 최 : 스포츠클라이밍3개 부문(리드,볼더,스피드)

라: 참여인원 : 총11명(남녀 리드 선수11명)

마: 경기결과 : 리드 여자 3위 김혜준(서종국클라이밍센터)

2. 2023년 수입·지출 총괄표

수 입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회 비	임원회비	33,950,000
	시군회비	7,500,000
	단위산약회 회비 및 가맹비	600,000
	소 계	42,050,000
체육회	사무실관리비	6,408,000
	사무실 임대료	4,141,000
	사무국장 활동비	12,000,000
	행정인력지원비	12,000,000
	소 계	34,549,000
각종대회 및 사업비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7,242,000
	제1회 교육감배	17,440,000
	뉴딜사업	25,637,085
	제2회 회장배(도대표선발전)	40,500,000
	제5회 경기도지사기	25,000,000
	제55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2,500,000
	제104회 동계체전	3,140,000
	문체부장관기	2,706,000
	오르락내리락	6,337,099
	유비무환안전산행캠페인	24,0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1,159,200
	전국체전	18,500,000
	3개시도 합동산행	1,800,000
	제32회 회장배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30,983,477
	소 계	
각종 대회 참가비	랑탕트레킹원정대	62,521,500
	고미영컵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1,410,000
	제1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944,000
	제2회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대표선발전)	3,520,000
	제5회 도지사기종합등반대회	5,930,000
	제55회 대통령기등산대회	300,000
	드라이틀링대회	300,000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200,000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420,000
	제32회 회장배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130,000
소 계	80,675,500	
각 위원회 연수비	대산연심판강습회(보수교육)	180,000
	빌레이취득검증	450,000
	생활체육위원회 심판연수	1,270,000
	스포츠클라이밍3급 심판,세터연수	9,630,000
	전문등산-2급심판 강습회	450,000
	소 계	11,980,000
기타수입	뉴딜사업 4대보험료대체(83)	4,487,490
	시산제 찬조금	2,760,000
	예금이자	8,196
	잡이익	200
	소 계	7,255,886
전기이월		16,719,225
계		403,455,247
총 계		420,174,472

지 출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체육회 운영비지원	사무실 관리비	6,408,000
	사무실 임대료	8,021,000
	사무국장활동비	11,967,420
	행정인력지원비	12,000,000
	소 계	38,396,420
사업비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7,242,000
	고미영컵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1,530,000
	제1회 교육감배	20,990,550
	뉴딜사업	25,681,590
	제2회 회장배(도대표선발)	43,426,258
	제5회 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28,120,600
	제55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2,800,000
	제104회 동계체전	3,124,100
	드라이틀링대회	300,000
	랑탕트레킹원정대	68,039,800
	문체부장관기	2,706,000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283,160
	오르락내리락	6,220,999
	유비무환안전산행캠페인(공모사업)	21,569,7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9,466,000
	제104회 전국체전	18,829,300
	3개시도 합동산행	1,400,000
	제32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9,415,940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420,000
	소 계	302,565,997
각 위원회 연수비	대산연심판강습회(보수교육)	180,000
	빌레이취득검증	450,000
	스포츠클라이밍3급 심판,세터연수	8,089,190
	전문등산-2급심판 강습회	450,000
	소 계	9,169,190
경상비	4대보험료	10,543,820
	경조사비	2,172,000
	광고홍보비	440,000
	급여	17,505,535
	기타	48,940
	대회 출장비	1,600,000
	도로교통비	828,041
	도서인쇄비	1,246,000
	복리후생비	4,311,410
	비품구입비	1,549,800
	신문구독료	180,000
	세금과공과	64,370
	소모품비	2,869,000
	수수료(ums)	61,780
	업무추진비	382,000
	연회비(사무국장)	300,000
	우편발송비	280,570
이체수수료	186,500	
통신료	757,440	
퇴직연금	2,670,000	
소 계	6,139,818	
차기이월		15,905,841
계		404,268,631
총 계		420,174,472

3. 2023년도 월별 수입 내역

구분	계정과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회 비	임원회비	500,000	2,500,000	2,450,000	12,000,000	500,000		500,000	1,000,000	3,000,000	500,000	7,000,000	4,000,000	33,950,000	
	시.군연맹회비	2,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7,500,000	
	단위산악회			480,000	120,000										600,000
	사무실 관리비			3,204,000			1,602,000				1,602,000				6,408,000
체육회 지원	사무실임대료			4,141,000										4,141,000	
	사무국장활동비			6,000,000			3,000,000				3,000,000			12,000,000	
	행정인력지원비			6,000,000			3,000,000				3,000,000			12,000,000	
각종대회 및 사업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7,242,000				7,242,000	
	제1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17,440,000										17,440,000	
	뉴딜사업				17,091,390				8,545,695					25,637,085	
	제2회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대표선발전)-공모사업						40,500,000							40,500,000	
	제5회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25,000,000					25,000,000	
	제55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2,500,000				2,500,000	
	제104회 동계체전		3,140,000											3,140,000	
	문체부장관기 전국등산대회							2,706,000						2,706,000	
	오르락내리락 교육사업							1,405,000	1,389,893		850,000	1,075,900	1,616,306	6,337,099	
	유비무환안전산행캠페인(공모사업)								24,000,000					24,0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20,490,000			669,200							21,159,200
	제104회 전국체전									10,500,000	8,000,000				18,500,000
	3개시도합동산행												1,800,000		1,800,000
제32회 회장배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e나라)												15,013,340	137	15,013,477	
제32회 회장배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체육회)										10,000,000		5,970,000		15,970,000	
각종 참가비	량탕트레킹원정대	23,000,000	34,360,000	5,161,500										62,521,500	
	고미영검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					150,000	1,260,000							1,410,000	
	제1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1,004,000	1,940,000				2,944,000	
	제2회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도대표선발전)						3,520,000							3,520,000	
	제5회 도지사기종합등반대회							300,000	5,630,000					5,930,000	
	제55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300,000				300,000	
	드라이틀링대회												300,000	300,000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200,000										1,200,000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420,000	420,000	
	제32회 회장배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130,000			2,130,000	
각 위원회 연수비	대산연심판강습회(보수교육)								180,000					180,000	
	빌레이취득검증									200,000	250,000			450,000	
	생활체육위원회 심판연수(2024년)												1,270,000	1,270,000	
	스포츠클라이밍3급 심판세터연수		200,000	8,000,000	1,405,000	25,000								9,630,000	
기 타	전문등산-2급심판 강습회			450,000										450,000	
	뉴딜사업 4대보험료이체(83)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98,610	4,487,490	
	시산제 찬조금		2,660,000											2,660,000	
	예금이자			48			3,751						4,397	8,196	
	잡이익(체크카드 할인)			200										200	
계		26,000,000	43,860,000	55,526,748	51,605,000	1,673,610	54,553,561	1,298,610	69,969,305	27,370,503	29,780,610	32,407,850	9,309,450	403,355,247	

4. 2023년 월별 지출 내역

구분	계정과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체 육 회 지 원	사무실 관리비			1,602,000	534,000	1,068,000		1,068,000				2,136,000		6,408,000	
	사무실임대료	3,880,000		4,141,000										8,021,000	
	사무국장활동비			2,967,220	967,000	1,066,200	1,000,000	967,000	1,033,000	967,000	1,000,000	1,000,000	1,000,000	11,967,420	
	행정인력지원비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0	
각종대회 및 사 업 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고미영컵						1,530,000			6,710,000		532,000		7,242,000	
	제1회 교육감배								20,000	18,574,840	2,292,840		102,870	20,990,550	
	뉴딜사업			2,753,510	3,353,510	2,753,510	2,753,510	2,753,510	2,753,510	2,753,510	2,753,510	2,753,510	3,053,510	25,681,590	
	제2회 회장배(도대표선발)						42,339,900	755,600	330,758					43,426,258	
	제5회 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559,000	27,111,600	450,000				28,120,600	
	대통령기 동계제전		3,124,100							2,178,700		121,300	500,000	2,800,000	
	드라이틀링대회													3,124,100	
	랑탕트레킹원정대	20,000,000	29,000,000	19,039,800										300,000	68,039,800
	문체부장관기									2,389,880	316,120				2,706,000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200,000	83,160										1,283,160
	오르락내리락									2,165,000	629,820	1,475,900	1,950,279		6,220,999
	유비무환안전산행캠페인 (공모사업)									5,389,000	295,600	1,967,100	13,510,000		21,161,7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9,466,000										19,466,000
	제104회 전국체전										10,500,000	8,311,100	18,200		18,829,300
	3개시도 합동산행												1,808,000		1,808,000
	제32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나라)												14,414,940	580,800	14,995,740
	제32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체육회)											5,899,200	8,506,480	14,520	14,420,200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시산제		1,200,000	500,000			100,000							420,000	420,000
	연 수 비	대산연심판강습회(보수교육)								180,000					1,800,000
		빌레이취득검증											450,000		450,000
스포츠클라이밍3급심판				2,669,590	5,419,600									8,089,190	
세터연수				450,000										450,000	
경 상 비	전문등산-2급심판 강습회			450,000										450,000	
	4대보험료	1,467,550	499,490	499,490	267,000	2,030,190	998,100	1,009,800	1,009,800		2,019,600	1,009,800		10,543,820	
	경조사비	236,000		259,000	267,000	118,000	177,000		139,000	118,000	266,000	474,000	118,000	2,172,000	
	광고홍보비	440,000												440,000	
	급여	1,459,485	1,462,005	1,462,000	1,461,905	1,461,905	1,461,905	1,456,055	1456055	1,456,055	1,456,055	1,456,055	1,456,055	17,505,535	
	기타					35,000						13,940		48,940	
	대회 출장비	200,000			400,000		600,000					300,000	100,000	1,600,000	
	도로교통비			50,000	210,000		50,000	2,000	100,000		266,041	50,000	50,000	828,041	
	도서인쇄비	90,500	199,500	956,000										1,246,000	
	복리후생비	101,000	962,600	298,000	355,400	151,100	529,800		201,000	597,940		14,600	1,099,970	4,311,410	
	비품구입비			849,800											849,800
	신문구독료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80,000	
	세금과공과											64,370			64,370
	소모품비	2,620,000	3,000	44,000		46,000				700,000	66,000		90,000	3,569,000	
	수수료(ums)	2,520	2,400	2,600	9,300	5,520	2,000	8,720	2,240	10,160	6,600	6,280	3,440	61,780	
	업무추진비					382,000									382,000
	연회비(사무국장)				300,000										300,000
	우편발송비	4,000				125,160					44,310	75,860	12,000	19,240	280,570
	이체수수료	3,500	7,500	7,000	28,000	2,000	27,500	4,500	15,000	36,500	19,500	20,000	15,500		186,500
	통신료	60,590	60,780	64,260	76,500	61,780	65,350	68,320	55,020	55,110	77,570	57,040	55,120		757,440
	퇴직연금	420,000							1,350,000	225,000		450,000	225,000		2,670,000
	회의비		1,413,000											1,595,300	3,008,300
	기 타	2022년도 사업비(이자)반납	325,106		6,412										331,518
위원회지원금													1,000,000	1,000,000	
계		31,325,251	37,949,375	40,083,172	33,346,375	11,021,365	52,550,065	11,017,505	36,346,983	55,743,046	26,934,375	39,901,515	28,049,604	404,268,631	

1.

임원선임(안)

Ⅲ.

2024년도 사업 주관신청(안)

1. 2024년도 사업 주관신청(안)

- 1) 제2회 교육감배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 2) 제3회 경기도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대표선발전 겸)
- 3) 2025년 / 2026년 경기도지사기 종합등반대회

IV.

회원단체 가맹승인(안)

1. 회원단체 가맹승인(안)

1) 과천시산악연맹

회 장: 한선규(680719)

직 업: 자영업

연락처: 010-5308-1469

2) 광주시산악연맹

회 장: 최종완(431119)

직 업: 자영업

연락처: 010-3710-6300

< 규약 전문 >

==> 제2장 조직

- 제 5 조(조직) ① 시·군산악연맹은 경기도산악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시·군산악연맹은 제①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체육회의 회원시·군체육회(이하 “시·군체육 회” 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군 산악연맹과 도 규모연맹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회원단체로 승인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승인 이전까지는 대의원 자격을 제외한 회원단체의 자격이 주어진다.

202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 기타사항

I. 기타사항

* 등산교육원 도규모 연맹체 인정 및 등산교육원장의 대의원 자격여부(안)

-2023년 정기종합감사 경고사항

2016년 경기도등산학교를 도단위 연맹체인 등산교육원으로 승격하면서 총회를 통하여 규약변경(아래참조)을 하였고, 이에 교육원장은 대의원을 자격을 갖게 되었음. 다만, 5년 이전의 서류들은 현재 폐기되어 증빙에 어려움이 있음.

< 규약 전문 >

==>> 제3장 대의원총회

제 7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 ①항에 따른 시·군 회원단체의 장 또는 대리인.

2. 제5조 제 ③항에 따른 도 규모 연맹체의 장

2024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 폐 회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규약
2023년 개정(안)



경기도산악연맹

2016년 6 월 22일 제정

2021년 3월 3일 개정

2021.4.14. 체육회 승인

2023. 2. 8.개정(안)

제1장 총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대한산악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5조 ①, ②, ③항과 경기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기도산악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맹의 명칭은 “경기도산악연맹”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GYEONGGI-DO ALPINE FEDERATION IN KOREA” (약칭 “KAFG”)라 한다.

제 2 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산악 종목운동을 경기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경기도의 산악 및 체육 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산악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산악연맹(KAF)와, 체육회 등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종목 단체로서 경기도를 대표한다.

제 3 조(사무소 소재지) ① 연맹의 사무소는 경기도내 소재지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시·군 회원단체 및 도 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운동의 발전과 각종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지도자 등의 양성과 산악 종목관련 자격 검증
8. 산악 종목의 경기시설 설치·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사업

9.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각종 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 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 통계
 13.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등산교육 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산악안전시설, 등산용 장비, 식량 등의 연구와 개선
 1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6. 그 밖에 산악 종목 진흥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연맹은 시·군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사업 및 대회개최를 승인 및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규모의 사업 및 산악종목대회는 연맹이 주최하여야 하며 주관과, 공동주관을 승인 및 지원 할 수 있다.
- ③ 연맹은 제①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연맹은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한다.

제2장 조직

- 제 5 조(조직)** ① 시·군산악연맹은 경기도산악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시·군산악연맹은 제①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체육회의 회원시·군체육회(이하 “시·군체육회” 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③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군 산악연맹과 도 규모연맹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회원단체로 승인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의 승인 이전까지는 대의원 자격을 제외한 회원단체의 자격이 주어진다.
- ⑤ 시·군의 산악연맹이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단위(개별)산악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등록팀 및 클럽)로 가입 할 수 있다.

- ⑥ 시·군의 산악연맹중 제④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시 해당지역에 (구)경기도산악연맹과 (구)경기도등산연합회에 이미 가맹되어 있는 회원단체들이 있을시 그 단체들의 과반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가맹단체를 제명할수 있다
 - 1. 규정에 정해진 기한을 기준하여 연회비를 2년이상 미납하는 단체.
 - 2.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단체행동 등으로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타 단체의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단체.
 - 3. 가맹단체의 임원 궤위, 분쟁, 회계부정, 연맹주관의 행사에의 지속적인(1년이상) 불참등 가맹단체가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4. 위의 1~3호는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참석대의원 2/3찬성으로 제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⑧ 제5조 제③항에 따른 도 규모 연맹체는 시·군 연맹체를 둘 수 없다.
- ⑨ 연맹은 도규모 연맹체의 조직,운영,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규약의 승인
 - 2. 임원의 인준
 - 3.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심사
 - 4. 정기감사의 실시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⑩ 연맹에 대한 시·군 회원단체 및 도 규모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대한산악연맹, 체육회와의 권리 및 의무)

- ① 연맹은 대한산악연맹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 2.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 3.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의 참가
 - 4.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
- ② 연맹은 대한산악연맹과 경기도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대한산악연맹 정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 및 제반 규칙, 기타 지시사항 준수
 - 2.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 3.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보고

③ 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체육회 규정 제 8조와 제 9조에 의거 처분 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 7 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 ①항에 따른 시·군 회원단체의 장 또는 대리인.
 2. 제5조 제 ③항에 따른 도 규모 연맹체의 장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연맹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⑦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⑧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 회원단체 및 도 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8 조(총회의 소집)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⑤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권위 또는 제②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 9 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군종목단체(경기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종목단체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 제15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⑤항 제4호의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서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39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2인

- ②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명예회장은 특이한 사안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이 우선 추천 되어야 한다.
-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도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①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맹의 대의원 수 보다 많아야 한다.
- ④ 연맹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직접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연맹, 시·군 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④ 연맹의 임·직원이 제③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 및 시·군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석 부회장이 우선 직무를 대행하며, 이때의 소집권자는 제15조 ②항의 절차에 따른다. 부회장중 직무 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임원 정수의 과반 수 이상이 발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①항과 ②항의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과 직무대행자는 각 각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①②항에 따른 자가 6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 ⑤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통상적인 사무만을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 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맹은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 또는 경기도 대표선수(연맹에서 직접 파견한 해외 원정대 대장 및 대원 포함)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연맹의 임원은 대한산악연맹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⑦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연맹에 선임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은(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시,군지부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연맹의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맹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 날까지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규약 제21조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종 위원회와 도 규모연맹체의 운영, 관리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를 포함하여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10분의 3이상]참석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⑦ 연맹의 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⑧ 연맹의 임원이 연맹,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군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⑩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⑪ 관련 직책(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원의 효율적인 업무와 각 위원회들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연맹소속의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으며 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임원은 재임기간중 의무(회비납부)를 다하지 못할 경우 연맹의 각 위원회 및 연맹조직의 구성원이 될수 없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在任)한 것으로 본다.
 - ⑤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도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연맹의 임원이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 ⑥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군 회원단체, 도 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본 연맹 규약 제52조의 ①항과 ③항의 회비납부기한 이후 해당 회계연도를 경과한 경우
5. 제 24조④항에 해당될때
6. 위 의 4호와 5호의 경우 위반사유를 해소한후 해당 본인, 또는 회장이 소청한 경우 이사회 의 심의 및 의결로 퇴임을 철회할수 있다.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

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시·군종목단체

- 제28조(시·군 회원단체의 지위 및 명칭)** ① 시·군 회원단체는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시·군명)산악연맹이라 표기한다.
- ② 시·군 회원 단체는 연맹의 지부 가맹 승인서(임원인준서 및 규약 포함)를 첨부하여 시·군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시·군 회원 단체는 시·군 회원 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위 산악 단체(시·군연맹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성인 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군연맹 소속 팀을 회원단체로 둘 수 있다.
- ④ 시·군 산악연맹은 제③항에서 규정하는 10개 이상의 단체로 결성되고 운영 되어야 한다.
- ⑤ 시·군 산악연맹은 정기총회 후 연맹의 조직(임원,가맹단체) 및 사업현황(사업계획서)을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시·군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군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8조③항에 단체 중 시·군·회원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② 시·군 회원단체는 제①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부회장)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③ 시·군 회원단체는 제①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회 참석수가 과반 이하로 2회 이상 제②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단체 외 소속 등록 팀과 비 가입산악 종목 동호인 단체(산악회 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산악단체를 참석하게 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시·군 회원단체의 장은 소속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③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산악 종목 동호인조직(산악회, 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내. 다만, 시·군에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④항의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시·군회원단체의 장이 제④항 및 제⑤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

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체육회는 제29조제⑤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시·군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군 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 회원단체의 규정 등) 시·군 회원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시·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회원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 체육회에서 제①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연맹에 문의 할시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연맹의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 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군 연맹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연맹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시·군 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군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 회원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회원단체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 연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군 회원단체는 연맹에 시·군 체육회의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

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본 연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시·군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체육회와 시·군 체육회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도 규모 연맹체 및 등산교육기관

제37조(설치 및 운영) ① 연맹은 제4조 제①항 13호의 등산교육기관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②항의 도 규모 연맹체의 설치와 운영과 제37조제①항에 의한 등산교육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임원 인준 및 임명) ① 도 규모연맹체의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연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등산교육기관의 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규정승인) ① 도 규모연맹체는 각 단체별로 연맹의 규약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하며,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감사)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규모연맹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제8장 각종위원회

제4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전문등산위원회,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①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 위원은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시,군 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출전경력자와 도 대표선발전 6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직책이사(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직책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제①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⑥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

⑦연맹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경기도산악연맹 조직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활동 할수 있으며,시,군연맹의 장과 사무국장(전무이사)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⑧각 위원회의 사업은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각각 사업하기 전,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논의 할 수 있다

제42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연맹과, 시·군회원단체 등의 각종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에 설치하는 제41조 및 제42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31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①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재원) 연맹의 규약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6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7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체육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9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과 시·군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그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연맹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그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연맹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본회의 「감사 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연맹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연맹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의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회비 규정) 연맹의 구성원은 다음의 회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맹의 모든 회비는 연 회비로 회원단체, 임원 모두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연맹에 가입신청하는 회원단체는 가입신청 시 연회비를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보선되는 임원은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장 사무국

제53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상근하는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연맹(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26조, 체육회 정관 제30조, 회원시·군 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사무국장 등 직원(시·군종목단체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4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임원의 결격사유 준용)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1장 보칙

제55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본회의 회원가입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6조(규약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규정 제정 및 개정 등) ① 연맹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규약을 체육회 경기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체육회의 규정,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9조(제한사항) 연맹이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4.14.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경기도산악연맹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경기도산악연맹 생활체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연락 사무소는 경기도산악연맹 사무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907호) 으로 한다.

제3조(목적)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 이사회의 자문기구이며(신설) 연맹에서 위임하는 생활체육등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협조함은 물론 정보교류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연맹과 소속단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운영규정 및 조직

제4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연맹의 규약을 준용 하여야 하며 특히 연맹의 규약 제41조, 제43조, 제57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한다.

제5조 (조직)

1. 위원회는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산하 조직으로 각급 심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규정에서 정한 임원외에 별도의 명예직을 추대 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주관 한다.

1. 각종 생활체육등산대회의 주관
2. 우수산악회 및 우수생활체육인 발굴
3. 각종 생활체육등산대회 경기도산악연맹 선수단 구성
4. 시.군 산악연맹 등산대회 지원
5. 각종 대회 개최지 선정 자문

6. 대회 코스선정 및 답사
7. 각종 대회 물품의 섭외 및 선정 자문
8. 기타 경기도산악연맹의 사업목적에 따른 지원.

제 7조(생활체육위원회의 구성)

본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경기도산악연맹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경기도산악연맹에 소속 시.군 산악연맹 또는 단위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시,군 산악연맹의 발전과 사업에 위해되지 않는 사람.
4. 위원은 본 위원회 근본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경기도산악연맹의 규정과 본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위원회는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업 및 업무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6. 본 위원회 위원 및 조직의 구성은 경기도산악연맹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운영위원**은 산행경력이 풍부하고 경기도산악연맹의 사업을 이해하고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8. 각 시,군연맹의 장,사무국장(전무이사),경기도산악연맹의 이사등의 직책에 있는 자는 각 위원회 위원(위원장 제외)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은 운영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 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경기진행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4. 위원은 회의 참석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권리)

본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제반 회의에 참관하여 위원회사업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발언권·의결권을 가진다.
3. 위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생활체육 등산대회 심판으로 참여할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탈회)

본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탈회서를 서면이나 SNS 문자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본 위원회의 의결로 경기도산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 될수 있으며 결정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가 주어 질 수 있다.

1. 경기도산악연맹 정관에 의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자로 확인 될 때는 즉시 해임된다
2. 본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시
2. 본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시
3. 회의, 행사, 등 본 생활체육위원회의 활동에 합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할 시
4. 정해진 기한 내에 회비를 미납하거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시
5. 탈회, 제명 등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기 납입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위원장은 사퇴를 권고 하거나 연맹에 해임을 요청할수 있다.

제12조(임원 및 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과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 위원장 3인 이내
3. 사무장 1인
4. 재무 1인<신설>
5. 위원 31명 이내 (임원 포함)
6.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 위원회 근본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총무와 협의하여 제반 사업을 독려 한다.
3. 사무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 및 재정을 담당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이다.

1.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에 준한다.
2.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위원장이 재임명 하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의 구분)

위원회의 회의는 **결산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결산회의는 12월중 실시하고 사업 및 회계결산을 보고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정기회의는 필요시 날짜, 장소, 시간 등 정하여 공지하고, 연맹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4.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5.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은 연맹 이사회에 보고하여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는 한 확정한다.<신설>

제16조(정족수)

본 위원회 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된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성원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본 위원회의 의결시 연맹규정에 따라 위임할수 없다.

제17조 심판의 직무와 윤리

심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은 대회 당일 선수 차와 동승하지 않으며 종료될 때까지 선수와 일절 접촉하지 않는다.
2. 심판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음주와 흡연을 금지한다.
3. 심판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경기도산악연맹 또는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지정한 심판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4. 심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5. 심판은 대회 중 선수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6. 시 군 연맹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먼저 서면으로 받고 모든 과정은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심판위원장)에게 **즉시보고** 하며 개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
7. 심판 규정이나 대회 규정에 관하여 의문시 심판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한다.

- 8. 심판들간의 공유하는 내용들은 시.군연맹에 누설하지 않는다.
- 9. 심판은 경기도산악연맹 생활체육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상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기도산악연맹 회장의 명으로 제명 또는 경고 조치한다.
- 10. 심판은 지정된 장소, 경기장 기타 심판이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다.
- 11. 심판은 대회 당일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유지, 행동 순서, 비상 루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12. 심판은 예우와 존중으로 선수를 평가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심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8조(운영자금)

본 위원회 운영자금은 경기도산악연맹의 지원금과 위원회 연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 1. 위원회 위원의 연회비는 120,000 원 으로 한다.
- 2. 그 외 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 3. 본 위원회 통장을 개설하여 사무장이 관리, 운영 한다.

제19조(회비의 용도)

본 위원회 회비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관련사업 및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 2. 결산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시 사용되는 비용

제20조(회계년도)

본 생활체육위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보고)

- 1. 모든 사업 및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생활체육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와 결산회의에서 의결하여 결과는 연맹의 이사회에 보고 한다.
- 2.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행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 의결로 시행된다.

제2조(지위)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자문 기구이다.

제3조(운영규정 개정) 본 운영규정은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제4조(상위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규약이 본 운영규정에 상위규정이며 본 운영규정에 기

술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심판비)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위원장과 책임심판은 12~16만원으로 한다.
2. 심판위원은 10~15만원으로 한다.

2018년 7월 12일 제정

2021년 4월 15일 개정

2023년 2월 8일 개정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경기도산악연맹 안전대책위원회 운 영 규 정 (안)

2023.2.08 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위원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산악연맹”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목적)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의 자문기구이며 경기도산악연맹과 시,군 회원단체의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의 규약에 의하여야 하며 특히 연맹의 규약 제41조,제43조, 제57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위임 및 승인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경기도 내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시 구급 및 구조 활동
2. 자연보호 활동
3. 산악운동과 등반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참여
4. 산악 가이드 활동
5. 연맹 행사시 안전예방 및 구조 업무 수행
6.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원은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시,군 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은 위원회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찬동하며 경기도 산악연맹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건전한 사고방식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의 교육과정(등산학교 정규반 교육과정 수료)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및 위원 구성)

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 산악연맹에서 추천하는 자로 각 연맹을 대표하는 안전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은 소정의 등반 교육을 수료하고 등반기술 능력 및 산악 봉사정신을 갖춘 위원으로 한다.
2.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위원회는 규정에서 정한 임원 외에 별도의 명예직을 추대 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3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각 시,군연맹의 장,사무국장(전무이사), 경기도산악연맹의 일반이사등의 직책에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6. 위원회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은 경기도산악연맹의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안전대책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위원은 경기도산악연맹 및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도산악연맹 및 본 위원회의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위원의 탈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또는 연맹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대원 자격의 상실 및 제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산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수 있다.

1. 경기도산악연맹 및 본 원회위의 규정을 위반할 시
2. 안전대책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3. 회의, 행사, 교육, 훈련 등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합당한 이유 없이 과반 이상 무단 불참할 시

- 4. 회비미납 및 제반 경비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시
- 6. 경기도산악연맹 및 위원회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시

제12조(임원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2인
- 3. 감사 1인
- 4. 총무 1인 및 부총무 각 1인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관장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보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3. 감사는 위원회의 감사(운영,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 4.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행정 및 재정,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이다.

- 1. 위원장은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에 따른다.
- 2. 감사외 임원은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하여 연맹에 보고한다.
- 3. 감사는 위원중 선출하여야 한다.
- 4. 임원의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연맹의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가 완료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한다.
- 5.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대장이 재임명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6.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7. 위원회 근본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 8. 각 시,군연맹의 장,사무국장(전무이사), 경기도산악연맹의 이사등의 직책에 있는 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회의의 구분)

본 위원회의 회의는 결산회의, 임시회의,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한다.

1. 결산은 매년 12월에 하되 전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대원 과반 수 이상 요청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소집한다.
3. 월례회의는 전월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4. 임원회의는 필요 시 소집한다.

제16조(개회 및 의결)

본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본 위원회의 각급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회의의 의결사항)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 연맹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요청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운영예산)

본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위원의 연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총당한다.

1. 위원의 연회비는 240,000원(월 20,000)으로 정한다.
2. 그 외 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자금 운영 계좌는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제19조(회비의 용도)

본 위원회의 회비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 각종 회의시 사용되는 비용
3. 훈련, 교육 및 행사 참가 시 부대비용

제19조(회기)

본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위원회의 예산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산의 사용은 위원중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받지 않은 긴급 예산의 사용은 위원장이 목적에 합당한가를 검토한 후, 선 집행할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모든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결과는 월례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서류로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결산회의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행정 및 회계 감사를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위원회의 규정개정은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의에서 개정한다.

제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등산위원회 운영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경기도산악연맹 전문등산위원회

운 영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경기도산악연맹 전문등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의 연락 사무소는 경기도산악연맹 사무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907호) 으로 한다.

제3조(목적)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이하 “연맹”)이사회의 자문기구이며 연맹에서 위임하는 전문등산 관련 업무 총괄하며, 사)대한산악연맹 및 연맹 전문등산 분과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업무를 담당하여 협조함은 물론 정보교류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연맹과 소속단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운영규정 및 조직

제4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의 규약에 의하여야 하며 특히 연맹의 규약 제41조, 제43조, 제57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한다.

제5조 (조직)

1. 위원회는 3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산하 조직으로 심판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3. 위원회는 규정에서 정한 임원외에 별도의 명예직을 추대 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주관 한다.

1. 연맹에서 시행하는 등산대회 주관.

2. 유망선수 및 우수지도자 발굴
3. 시·군 산악연맹 등산대회 심판 파견
4. 전문등산 3급 심판 양성
5. 사)대한산악연맹 2급 심판연수 파견
6. 전국 등산대회 심판 및 운영요원 파견
7. 연맹 행사 및 사업에 참여
8. 기타 경기도산악연맹의 사업목적에 따른 지원.

제3장 전문등산위원회

제7조(전문등산위원회 위원의 구성)

본 전문등산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기도산악연맹 시·군 산악연맹 전문등산분야를 대표할수 있는 자로 경기도시군연맹 회장의 추천을 받아 연맹 규약 제41조8항에 의거 연맹의 승인을 득한 자
(타 위원회 겸직을 금한다.)
2.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위원회 근본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전문등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4. 각 시·군연맹의 장, 사무국장(전무이사), 경기도산악연맹의 이사등의 직책에 있는 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전문등산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은 운영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전문등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위원은 전문등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산악기술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4. 위원은 회의 참석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등산위원의 권리)

본 전문등산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경기도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제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수 있으며 ,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3. 연맹의 전문등산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문등산 3급 심판 연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4. 사)대한산악연맹 전문등산 2급 공인심판 연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단, 전문등산위원 자격이 유효하고, 경기도산악연맹 전문등산 3급 심판 자격 소지자만이 응시 할 수 있다.
- 5. 사)대한산악연맹 전문등산 2급 공인심판 연수에 할당 된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 공헌도, 참여도, 관련교육 수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장이 선발하여 파견한다.

제10조(전문등산위원회의 탈회)

본 전문등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탈회서를 서면이나 SNS 문자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등산위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경기도산악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 되며 결정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가 주어 질 수 있다.

- 1. 경기도산악연맹 규정에 의하여 결격자로 결정 될 때
- 2. 본 전문등산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시
- 2. 본 전문등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시키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 3. 회의, 행사, 등 본 전문등산위원회의 활동에 합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할 시
- 4. 정해진 기한 내에 회비를 미납하거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시
- 5. 탈회, 제명 등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기 납입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6.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위원장은 사퇴를 권고 하거나 연맹에 해임을 요청할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연맹 전문등산이사)
- 2. 부위원장 3명이내(분과장)
- 3. 사무장 1인
- 4. 재무 1인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4. 재무는 사무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전문등산위원장은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 정관에 준한다.
2.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위원장이 재임명 하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의 구분)

본 전문등산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전문등산위원회, 심판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를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한다.
2. 결산회의는 12월중 실시하고 사업 및 회계결산을 보고하고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할수 있으며, 연맹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우선 논의할수 있다.
6.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은 연맹 이사회에 보고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한 확정된다.<신설>

제16조(정족수)

본 위원회 회의 의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된다.
2. 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성원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본 위원회의 의결시 연맹규정에 따라 위임할수 없다.

제6장 재정

제17조(운영자금)

본 위원회 운영자금은 위원회 연회비와 찬조금, 연맹 지원금으로 한다.

1. 위원회 위원의 연회비는 120,000 원 으로 하고, 납부기한을 당해 1월 말일로 한다.
2. 그 외 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통장을 개설하여 총무가 관리, 운영 한다.

제18조(회비의 용도)

본 위원회 회비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각종 교육과 대회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 각종회의와, 행사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

제19조(회계년도)

본 전문등산위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보고)

1. 모든 사업 및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전문등산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과는 연맹의 이사회에 보고 한다.
2.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행정,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경기도산악연맹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2조(운영규정 개정) 본 운영규정은 연맹의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경기도산악연맹의 자문 기구이다.

제4조(상위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이 본 운영규정에 상위규정이며 본 운영규정에 기술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규정에 따른다.

제 정 : 2016년 11월 27일

1차 개정 : 2018년 11월 22일

2차 개정 : 2021년 4월 15일

3차 개정 : 2023년 2월 8일 개정(안)

MEMO

MEMO